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303

발의연월일 : 2011. 8. .
발 의 자 : 허영옥 의원

1. 제안이유

충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(기존 5백미터→1킬로미터)
(조례안 제12조)

3. 관계법령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 3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

4. 입법 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5. 소요예산 : 해당없음

6. 기타 참고사항(집행부 의견조회)

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바, 제안한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.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직선거리 500미터”를 “직선거리 1킬로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중 “2013년 11월 23일”을 “2015년 11월 23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전통보존구역의 지정) ①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**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**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	**제12조(전통보존구역의 지정)**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**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** ---------- ----------.
1.~2.(생략)	1.~2.(현행과 같음)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제10조 제7호·제8호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**2013년 11월 23일까지** 효력을 가진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----- 제2조(유효기간) ---------- ---------- **2015년 11월 23일까지** -----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13조의3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30>
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11.24]
[법률 제10398호(2010.11.24)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]